

는溯及하여 그效力이發生한다

第二十條 (住所나居所가 없는者の代理人) ①國內에住所나居所를가지지 아니한者는閣令의定하는境遇를除外하고는國內에住所나居所를가지지代理人을通하지 아니하고서特許에關한出願請求 및 其他의節次나特許權 또는 特許에關한主張을하지 못한다

②前項의代理人은出願이나請求 및 其他의主張을한權限이 있는外에本法 또는 本法에依據하여發하는命令에規定한節次其他民事訴訟과告訴에關하여本人을代理한다

③特許權者 또는 特許權에關하여登錄을한者의代理人으로서第一項에規定한節次 또는 主張을한代理人の選任,變更을하지 아니하고서第二項에變更,消滅을登錄을하지 아니하면第三者에對抗하지 못한다

④民事訴訟法第四章의規定은前項의代理人에對하여 이를準用한다

第二十一條 (其他代理人的申告)

特許에關한出願, 請求其他의節次를발한者의代理人으로서前條第三項의規定에依한代理人이 아닌者의選任,變更 또는 代理權의變更,消滅은特許局에申告하지 아니하면特許局에對抗하지 못한다

第二十二條 (委任代理權의存續) 特許에關한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

를발한者의委任에依한代理人の代理權은本人의死亡, 能力의喪失, 法人의合併에依한消滅, 信託任務의終了 또는 法定代理人の死亡이나能力의喪失 또는 代理權의變更, 消滅로因하여消滅하지 아니한다

第二十三條 (數人の代理人) 特許에關한代理인이數인이 있을境遇에는特許局에對하여各自가本人을代理한다

第二十四條 (代理人的改任) ①特許局長은特許에關한代理인이不適當하다고認定할 때에는 그改任을命할수 있다

②特許局長 또는 審判長은當事者, 參加人, 特許異議申請人 또는 그代理인이節次 또는 口頭審理에서陳述한能力이 없다고認定할 때에는 辨理士로 하여금代理하게 할것을命할수 있다

③前二項의規定에依한命令이 있는後에第二項의代理人 또는 前項의當事者, 參加人, 特許異議申請人과 그代理인이特許局에對하여行爲는이를無效로할수 있다

第二十五條 (共有者의代表) ①數인이特許에關하여共同으로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를발한者 또는 特許權의共有者는特許局에對하여各者가代表한다 但特許代表者를選定하여特許局에申告한 때에는 例外로한다

②第二十一條의規定은前項但書의代表者에 이를準用한다

第二十六條 (財産所在地의裁判籍)

特許權者가國內에住所나居所가 없을 때에는第二十條第二項의代理人の住所나居所에依하고 그代理인도 없을 때에는 特許局所在地를民事訴訟法第九條의規定에依한財産所在地로 본다

第二十七條 (法定期間의延長) 特許局長은外國 또는 遠隔하고交通不便한地方에 있는者를爲하여請求 또는 職權으로써 特許局에節次를발아야 할法定期間을延長할수 있다

第二十八條 (期間의懈怠와特許料의不納) ①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를발한者가그後의行爲에對하여指定期間을懈怠하거나登錄을받음에納付하여야 할特許料의納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本法에따라規定이 있는境遇를除外하고는特許局長은그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를無效로할수 있다

②前項의規定에依하여出願, 請求 및 其他의節次가無效로된境遇에도 그期間의懈怠가天災, 地變其他不可避한 것으로認定될 때에는 그事由가그친날로부터十四日以内二期間滿了後一年以内에請求에依하여特許局長은그懈怠의結果를免除하게 할수 있다

第二十九條 (期間의懈怠와追完) 天災, 地變其他不可避한事由로因하여特許에關한出願, 請求 또는 節次를발한者에게歸責할수 없는事由로因하여

第三百十七條, 第三百二十九條第一項 또는 本法에서準用하는民事訴訟法第四百十四條의規定에依한法定期間을遵守할수 없을 때에는 그事由가그친날로부터十四日以内에, 二期間이滿了된後一年以内에限하여懈怠한節次를追完할수 있다 但第七十六條의規定에依한特許異議申請期間은例外로한다

第三十條 (委任規定) 特許局에提出하는書類 및 其他物件의效力發生의時期에關하여 必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三十一條 (權利的承繼와節次의效力) 本法 또는 本法에依據하여發하는命令에依하여特許權者, 特許에關한權利를가지는者가발한節次 또는 特許局 및 第三者가그者에對하여발한節次의效力은그特許權 또는 特許에關한權利의承繼人에 미친다

第三十二條 (權利的移轉이 있는境遇의節次의承繼) 特許局에事件이繫屬中에特許權 또는 特許에關한權利의移轉이 있는 때에는 特許局은承繼人에對하여 그節次를續行하게 할수 있다

第三十三條 (節次의中斷, 中止에關한委任規定) 本法에規定한것外에特許局에繫屬中인節次의中斷, 中止 및 要한事項은閣令으로定한다

第三十四條 (特許에關한書類의閱覽 및

二〇二六—二〇七

當時에 이를 한 것으로 본다. 但 그特許의 出願公告가 있는 날로부터 五年을 經過한後에 出願을 하거나 審決이 確定된 날로부터 三十日을 經過한後에 出願을 한 境遇에는 例外로 한다.

第十三條 (特許를 받음으로 있는 權利)

①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는 이를 移轉할 수 있다. 但 擔保에 供하지 못한다.

②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가 共有인 境遇에는 共有者는 다 른 共有者의 同意없이 그 持分을 讓渡하지 못한다.

③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承繼는 特許出願前에 있어서 承繼人이 特許를 出願하고, 特許出願後에 있어서 是를 相續其他 一般承繼의 境遇를 除外하고는 出願人의 名義變更 申告를 하지 아니하면 그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但 同日의 出願 또는 申告가 競合하였을 때에 는 關係者의 協議에 依하여 協議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모두 그 效力을 發生하지 아니한다.

第十四條 (期間의 計算) 本法 또는 本法에 依據하여 發하는 命令에 依한 期間의 計算은 다음 각 號에 依한다.

- 一、期間의 初日은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但 그 期間이 午前 零時로부터 始作될 때에는 例外로 한다.
- 二、期間을 定함에 있어서 月 또는 年으로 할 때에는 曆에 따른다.
- 三、月 또는 年의 처음으로부터 期間을

起算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最後의 月 또는 年에서 그 起算日에 該當한 날의 前日로 期間이 滿了한다. 月 또는 年으로 定한 境遇에 最終의 月에 該當日이 없을 때에는 그 月의 末日로 期間이 滿了한다.

四、特許에 關한 出願請求 其他의 節次에 關한 期間의 末日이 公休日에 該當될 때에는 그 翌日을 그 期間의 末日로 한다.

第十五條 (被用者의 發明) ①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의 勤務에 關하여 發明에 對하여는 그 發明이 性質上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의 業務에 屬하고 또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의 任務에 屬하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미지 사용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로 하여금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나 特許權을 承繼하도록 定한 契約 또는 勤務規程의 條項은 이를 無效로 한다.

②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 그 職務에 關하여 發明한 것이 性質上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의 業務에 屬하고 그 發明을 하게 된 行爲가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의 任務에 屬하는 것에 對하여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이 特許를 받았거나 特許를 받을 權利를 讓受한 者가

許를 받았을 때에는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는 그 發明에 對하여 實施權을 가진다.

③ 法人의 任員이라 함은 法人의 業務를 執行하는 者를 말하고, 公務員이라 함은 法令에 依하여 公務에 從事하는 者를 말한다.

第十六條 (被用者에 對한 補償金)

① 被用者, 法人의 任員 또는 公務員은 前條 第二項의 發明에 對하여 特許를 받을 權利 또는 特許權을 미지 定한 契約이나 勤務規程에 依하여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로 하여금 承繼하게 한 境遇에는 相當한 補償金을 받을 權利를 가진다.

② 前項의 代價決定에 있어서 는 그 發明에 依하여 使用者가 얻을 利益을 考慮하여 야 하며, 被用者가 正當한 決定方法을 提示하였을 때에는 이를 參酌하여 야 한다.

③ 使用者, 法人 또는 職務를 執行하게 하는 者가 미지 拂報酬가 있을 때에는 法院은 前項의 補償金을 定할 때에 이를 參酌하여 야 한다.

第十七條 (國防上 또는 公益上 必要한 發明)

① 特許를 出願한 發明이 國防上 또는 公益上 必要한 것일 때에는 特許를 하지 아니하거나 特許를 받을 權利를 政府에서 收用하거나 制限을 加하여 特許할 수 있다.

二〇二六—二〇六

② 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特許를 許與하지 아니하는 境遇 또는 權利를 收用하거나 制限을 加하여 特許한 境遇에 는 政府는 相當한 補償金을 支給하여 야 한다.

③ 前項의 收用 補償金 支給額과 그 方法 및 秘密特許 審査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閣令으로 定한다.

第十八條 (法人이 아닌 團體) 法人이 아닌 團體로서 代表者나 管理人이 定하여져 있는 때에는 그 名義로써 審判의 請求人 또는 被請求人이나 異議申請人이 될 수 있다.

第十九條 (行爲能力) ① 未成年者, 禁治產者, 限定治產者는 그 法定代理人의 同意없이 特許에 關한 節次를 行爲할 수 없다. 但 未成年者가 獨立하여 法律行爲를 할 수 있는 境遇는 例外로 한다.

② 限定治產者가 特許에 關한 節次를 行爲할 때에는 後見人의 同意를 얻어 야 한다.

③ 出願에 對한 節次의 能力이나 法定代理權 또는 節次를 行爲할 때에 必要한 授權의 欠缺이 있을 때에는 期間을 指定하여 그 補正을 命한다. 補正을 命하여 도 이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欠缺을 補正할 수 없을 때에는 第二十八條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出願을 無效로 할 수 있다.

④ 行爲能力이나 法定代理權이 없거나 節次를 行爲할 때에 必要한 授權의 欠缺이 있는 者가 行한 節次는 그 欠缺이 없는 當事者 또는 法定代理人의 追認이 있는 때에

官報

제三千三十八號(其七)
단기四二九四年十二月三十一日

공보부발행

법률

國家再建最高會議의議決로確定된特許法을이에公布한다

大統領 尹 潯 善 璽

檀紀四千二百九十四年十二月三十一日

內閣首班 宋 堯 諤

商工部長官 丁 來 赫

◎法律第九五〇號

特許法

第一章 總則

第一條 (目的) 本法는發明을獎勵, 保護育成함으로技術의進歩發展을圖謀하고國家産業의發達에寄與하게함을目的으로한다

第二條 (特許의對象) 産業에利用할수있는新規의發明을한者는그發明에對하여特許를받음수있다

第三條 (植物發明特許) 無性的으로反復生殖할수있는變種植物을發明한者는그發明에對하여特許를받음수있다

다 但塊莖, 塊根, 球根을除外한다

第四條 (不特許事由) ① 다음에揭記하는發明에對하여는特許하지아니한다
一, 飮食物 또는嗜好物
二, 醫藥 또는 二調合法
三, 化學方法에依하여製造할수있는物質
四, 秩序 또는風俗을紊亂하게하거나衛生에害가있을念慮가있는것

◎前項第一號乃至第三號의物質을製造할수있는方法에關한發明은例外로한다

第五條 (新規性의定義) 本法에서新規의發明이라함은다음各號의一에該當하지아니하는것을말한다
一, 特許出願前에國內에서公知되었거나또는公然히使用된것
二, 特許出願前에國內에서頒布된刑行物에容易하게實施할수있는程度로記載된것

第六條 (新規性의擬制) ① 特許를받음있는者가自己의發明을試驗하기爲하여前條各號의一에該當하게한境遇에는그날로부터六月以內에, 特許를出願한때에그發明은新規의것으로본다

② 特許를받음수있는者의意思에反하여그發明이前條各號의一에該當하게된境遇에는그날로부터六月以內에特許를出願한때에도前項과같다

第七條 (新規性의擬制) 特許를받음수있는者가政府나서울特別市, 道, 市, 郡 또는이에準하는機關에서開設하는博覽會나政府의認可를받아開設하는博覽會 또는閣令으로定하는外國의博覽會에出品하기爲하여自己의發明을第五條各號의一에該當하게한境遇에는그開會日로부터六月以內에特許를出願하였을때그發明은新規한것으로본다

第八條 (單一出願單一發明) ① 特許出願은一發明에對하여一出願으로한다 但二以上の發明이相互牽聯하여利用上一發明의된다그認定되는境遇에는例外로한다

◎前項但書의規定에依한出願者는特許出願書의添附事項을記載하여야한다

第九條 (出願分制) 二以上の發明은一出願으로한者가二以上の出願으로分割出願한境遇에는그分割出願은最初에출願한때에출願한것으로본다

第十條 (先出願者에對한特許) 同一한發明에對하여는最先出願者에限하여特許한다 但同日에二以上の出願이競合하였을때에는各出願者의協議에依하여그中一人만을特許하며協議가이루어지지아니할때에는모두特許하지아니한다

第十一條 (無權利者의出願과正當權利者의保護) 特許를받음수있는權利의承繼인이아닌者 또는特許를받음수있는權利를自認한者가한出願임으로因하여特許를받지못하게된境遇에는그特許出願後에正當權利者의出願은그特許를받지못하게된特許出願한때에이름出願한것으로본다 但特許를받지못하게된날로부터三十日을經過하거나出願公告가있을날로부터三十日을經過한後에出願한境遇에는例外로한다

第十二條 (無權利者의特許와正當權利者의保護) 特許를받음수있는權利의承繼인이아닌者 또는特許를받음수있는權利를自認한者가特許를받았기에문에서그特許를無效로하는審決이確定한境遇에는그特許의出願後에正當權利者의出願은無效된特許의出願

●법률
법률제九五〇호(특허법)
법률제九五二호(의장법)
법률제九五三호(선동선언법)
법률제九五三호(전기사업법)